

의안번호	2216407
의 퇴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계번호	26D0201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5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50만원(연평균 9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민간위원 5명 위촉	90	90	90	90	90	4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	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35명이내로 증원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증원되는 위원 5명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5명으로 충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 추계
- 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은 150,000원, 연평균 회의개최횟수는 1.2회임
 - 회의참석수당과 연평균 회의개최횟수는 추계기간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연간 회의개최 횟수를 적용하면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50만원(연평균 9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위원회 위원 증원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추가로 위촉되는 민간위원 수	5	5	5	5	5	-
회의참석수당	15	15	15	15	15	-
연간 회의개최횟수	1.2	1.2	1.2	1.2	1.2	-
합계	90	90	90	90	90	4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